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-117 호

『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3월 17일

중소기업청장

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최근 창업지원법 및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프로젝트 투자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 신설 및 개정됨에 따라,
 - 「창투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」에서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된 조항이 법 및 시행규칙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 필요

< 프로젝트 투자 관련 창업지원법 및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>

	개정 전	개정 후
창업지원법	제10조(등록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	제10조(등록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
	< 신설 >	<u>5.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,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</u>
창업지원법 시행규칙	<p>제9조(투자의 범위) 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"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,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<u>4.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과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</u></p>	<p>제9조(투자의 범위) 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.</p> <p><u>2.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(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제외한다)이 영위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</u></p>

2. 관련근거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

3. 주요내용

- 프로젝트 투자 정의 및 범위 관련 조항 정비*(안 제7조의2 제1항)
 - * 프로젝트의 정의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프로젝트를 정의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을 인용하여 "프로젝트 투자" 및 "프로젝트"에 대한 용어를 정의
- 프로젝트 투자 정의 조항 정비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(안 제3조제1항 제3호, 제3조 제2항,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, 제4항)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(벤처투자과)으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내용
 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반 여부와 그 이유)
 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- 제출처 : 중소기업청(벤처투자과)
-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 - 우편 : 302-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
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
 - 팩스 : 042-481-4418
- 문의 :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(042-481-4422)
-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<붙임 1>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투자대상 및 방법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"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 투자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.	제3조(투자대상 및 방법 등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1. ~ 2. (생 략) 3. 해외 기업이 제작하는 문화산업(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2조 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)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약정되었으며, 제작 분야가 문화산업(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.)인 프로젝트 투자
4. (생 략)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"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	4.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"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

현 행	개 정 안
다.	다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2(프로젝트 투자) ① 규칙 <u>제9조제4호에서 “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”라 함은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며, 타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투자를 말한다.</u>	제7조의2(프로젝트 투자) ① 규칙 <u>제9조제2호에서 “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분야”라 함은 다음을 말하며,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동 분야에 투자하는 행위를 “프로젝트 투자”라 하고, “프로젝트 투자”의 투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을 “프로젝트”라 한다.</u>
1. ~ 9. (생 략) ② <u>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실제 자금을 관리하는 자는 회계독립성 유지를 위해 타 사업과 회계를 구분 계리하고,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운영하여야 한다.</u> ④ <u>1항에서 규정한 프로젝트 투자 중 규칙 제9조에서 정한 기업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경우에 한해 법 제16조 1항에서 규정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”에 포함시킬 수 있다</u>	1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<u>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동 사업의 자금을 실제 관리하는 자는 회계독립성 유지를 위해 타 사업과 회계를 구분 계리하고,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운영하여야 한다.</u> <u><삭 제></u>